

인천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4가합56023 판결 [주식매매대금 반환청구의 소]

전 문

원고1. A

2. B

3. C

피고D

변론 종결2015. 4. 22.

판결 선고2015. 5. 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E 주식회사의 주식 30,000주를 이전받음과 동시에 150,000,000원을, 원고 B에게 위 주식회사의 주식 15,000주를 이전받음과 동시에 75,000,000원을, 원고 C에게 위 주식회사의 주식 15,000주를 이전받음과 동시에 7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2008. 9. 2.자 주주명부에는 발행주식 총수 100,000주 중 피고가 40,000주, 원고 A가 30,000주, 원고 B, C이 각 15,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08. 12. 중순경 피고에게, 원고들이 보유한 소외 회사 주식을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매매대금(원고 A의 경우 150,000,000원, 원고 B, C의 경우 각 75,000,000원)으로 각 매도하기로 하면서, 그 매매대금은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주식을 담보로 기업운영자금을 대출받는 즉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들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가 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500,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에 원고들 소유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원고들 소유의 주식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과 피고 명의의 소외 회사 주식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적이 있는 사실, 소외 회사 주식에 관하여 2009. 2. 23. 인천세무서에 원고 A는 900,000원의, 원고 B, C은 450,000원의 각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사실, 소외 회사가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한 소외 회사의 2008. 12. 24.자 주주명부에는 발행주식 총수 100,000주 중 피고가 65,000주, F이 15,000주, G이 10,000주, H가 10,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소외 회사가 원고들 소유의 주식을 담보로 발급받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2009. 3. 16. 300,000,000원을, 2009. 7. 28. 200,000,000원을 각 차용하여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였고, 그 매매대금이 원고들 소유 주식수에 주식의 액면가액을 곱한 금액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원고들과 피고 명의의 소외 회사 주식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원고 A의 남편 I가 원고들이 보유한 소외 회사 주식을 담보로 기업운영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진정으로 소외 회사 주식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없다고 다두고 있다.

② 원고 A의 남편인 I는 J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17492(본소), 2012가단35957(반소) 대여금 등 청구소송의 2012. 7. 6.자 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J으로부터 2004. 7. 말경 80,000,000원을 차용할 당시 저는) 관리이사로서 자금을 관리하였다.",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D(피고)은 영업 쪽만 담당하고, 나머지 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J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것에 대하여) D(피고)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제(I)가 소외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한 실질적인 운영자였다. 다만, 제가 소외 회사 설립 초기에 D(피고)에게 제 주식 중 40%를 주었다.", "(현재도 소외 회사의 주식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③ 소외 회사가 원고들 소유의 주식을 담보로 발급받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2009년경 합계 500,000,000원을 차용하여 자금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원고들이 그때로부터 2013. 7. 25. 소외 회사의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기까지 피고에게 각 주식매매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권희

판사홍윤하

판사정순열